9.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공고 제1998-207호 1998. 5.23

주 요 골 자

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나. 택지취득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폐지하고, 1998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부터 이를 폐지함.

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었거나 부과기준일이 1998년 5월 31일 이전인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